

제정 2023.03.10

개정 2024.01.01

개정 2025.01.01

청년형 장기집합투자중권저축약관

제 1 조(약관의 적용) 이 약관은 저축자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회사"라 한다)간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중권저축계약 체결에 적용되며, 이 약관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'수익중권저축약관'에 따른다.

- 제 2 조(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저축방법 등) ① 회사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·출금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(거래카드, 거래내역서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의하여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해야 한다.
- ② 회사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·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"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"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.
- 제 3 조(청년형 장기집합투자중권저축의 가입)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중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(가입일 현재 만 19 세 이상 만 34 세 이하인 사람)으로서 제 1 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여야 한다. 다만,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(6년을 한도로 한다)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.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.
 - 가.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,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)
 - 나.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이하인 경우 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)
 - 다. 소득 기준연도는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 가입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(이하 "총급여액등"이라

- 한다)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적유한다.
- 라. 거주자가 「소득세법」제 12 조제 3 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는 비과세소득만 있는자로 보지 않는다.
- 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중권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「병역법 시행령」제 155 조의 7 제 2 항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저축자가 제 1 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즁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,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이내에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저축자는 국세청장이 회사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. 다만, 저축자가 사망, 해외장기출장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- 제 4 조(저축대상 상품)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중권저축 상품은 회사의 홈페이지(www.kebhana.com >> 고객센터 >> 편드자료실 >> 청년형 장기펀드(장기집합투자중권저축)에 고지하기로 한다.
- 제 5 조(저축한도) 저축자는 연 600 만원 이내(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)에서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. 단, 만기 이후에는 한도정정(중액) 및 추가 납입을 할 수 없다.
- 제 6 조(가입기간 및 저축기간)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중권저축의 가입기간은 신규 매입체결일 기준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중권저축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은 불가하다.
- 제 7 조(전환 및 인출) ① 저축자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이하"자본시장법"이라 한다)」제 232 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중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② 저축자는 납입한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출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③ 전환형 장기집합투자중권저축 상품 간의 전환은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상품으로만 가능하다.

- 제 8 조(세제혜택)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중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5 년 동안 각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 분의 4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(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)받을 수 있다.
-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중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 1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.
- 1.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(종합소득금액의 경우 6,700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
- 2.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
- 제 9 조(세제예택 제한)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6권 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,이자,배당,주식 또는 수익 6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 8조 1항에 따른 소득 8제를 받을 수 없다.
- 제 10 조(추정)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중권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 부터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중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, 회사는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100 분의 6.6(지방소득세 포함)을 곱한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.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저축자가 해당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중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정한다.
- ② 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추징한 경우 회사는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.
- ③ 저축자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중권저축의 가입일부터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 2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사유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.
- 1. 저축자의 사망·해외이주
- 2. 천재지변
- 3. 저축자의 퇴직
- 4. 사업장의 폐업
- 5.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
- 6. 회사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 · 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- 7.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 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
- ④ 저축자가 제 3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 11 조(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료의 정보제공) ① 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에 저축자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료를 제출하며, 저축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부내역(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)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- 제 12 조(약관의 변경 등)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(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, 신·구대비표 등)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.
-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개별통지(신·구대비표 포함)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"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-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 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 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 13 조(관계법규 등의 준용)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(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등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.
- ② 이 약관과 개별 금융투자상품별 약관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.

③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'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'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적용된다.

제 14 조(양도등의 제한) 저축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질권(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)을 설정하거나,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 15 조(분쟁조정)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,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<부칙>

- 1. 이 약관은 2023년 03월 10일 부터 시행한다.
- 2.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3.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※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